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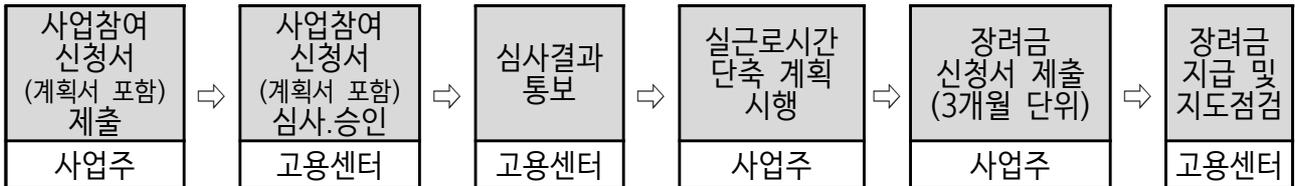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24 신설>

□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text{❖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text{②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text{④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일감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문의: 고객센터 1350,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1-760-7100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산정 예시〉

* A사는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으로 '24.1.5. 사업계획 제출(승인 1.10) 후 2.1일 단축 시행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23.10~12월)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단축 후 3개월('23.2~4월)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47시간이므로 동 사업장의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4시간으로 지원 가능

구분	단축 시행 전						단축 시행 후				
	'23.10	'23.11	'23.12	계	3개월 평균		'24.2	'24.3	'24.4	계	3개월 평균
김00	209	220	240			'24. 1.10 승인	209	205	200		
이00	240	210	230				220	210	210		
오00	220	230	220				209	200	209		
강00	230	205	209			'24. 2.1 단축 시행	200	200	209		
계(㉔)	899	865	899				838	815	828		
1인당 월평균(㉕)	224	216	224	664	221(㉖)		209	203	207	619	206(㉗)
1인당 주평균(㉘)	221시간/4.3주=51				51(㉙)	206시간/4.3주=47.9				47(㉚)	

* (산정방식) ㉕=㉔/피보험자수, ㉖=㉕/3월, ㉘=㉕/4.3주 → 실근로시간 단축시간 = ㉙-㉚

* 소수점 이하 버림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산정 예시〉

* '24.2.1. 실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이행하여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B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산정

→ '24.2월 108만원(12명×0.3×30만원)+'24.3월 90만원(10명×0.3×30만원)+'24.4월 90만원(8명→3명×30만원), 총 288만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는 (지원 대상 근로자수 × 0.3)으로 계산

구분	입사일	비고	단축 시행 전				단축 시행 후		
			'23.10	'23.11	'23.12		'24.2	'24.3	'24.4
김00	20.1.1		○	○	○	'24. 1.10 승인	○	○	○
이00	22.10.1	고보 상실일 '23.12.31.	○	○	-		×	×	×
강00	24.3.1		-	-	-		×	×	×
홍00	22.5.20		○	○	○	'24. 2.1 단축 시행	○	○	○
배00	23.11.29	고보 상실일 '24.4.30.	-	○	○		○	○	×
오00	23.2.1	고보 이직일 '24.2.29.	○	○	○		○	×	×
Billy	22.1.2	외국인	○	○	○	'24. 2.1 단축 시행	○	○	○
박00	22.1.20	24.3.5. 휴직중	○	○	○		○	○	○
오00	23.12.1		-	-	○		○	○	○
하00	23.11.20	고보 이직일 '24.3.31.	-	○	○	'24. 2.1 단축 시행	○	○	×
고00	22.1.10		○	○	○		○	○	○
권00	22.5.10		○	○	○		○	○	○
양00	22.6.20	고보 상실일 '24.3.31.	○	○	○	'24. 2.1 단축 시행	○	×	×
정00	22.10.30		○	○	○		○	○	○
월별 단축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합계							12	10	8

* (지원 대상자)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은 모두 지원하되, 단축 시행 후 신규로 고용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